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2012.10.15.(월), 14:30

■ 장 소: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박강철(위원장), 고부자, 김경표, 김명자,

이해준, 장헌덕, 정명섭(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화재위원회

	목 차				
【심의	【심의사항】				
1	논산 백일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공개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부용대 안전난간 설치	공개			
3	안동 하회마을 입구 종합안내판 설치	공개			
4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신축	공개			
5	성읍 민속마을 내 농협 하나로마트 증축	공개			
6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용도변경 및 부속시설 증축	공개			
7	경주 양동마을 주변 광고입간판 설치	공개			
8	진접 여경구가옥(중민 129)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궁집(중민 130) 주변 공원 조성 기본계획	공개			
10	영동 김참판고택(중민 142) 주변 게이트볼장 신축	공개			
11	영동 김참판고택(중민 142)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2	영동 김참판고택(중민 142) 주변 양강 보건지소 신축	공개			
13	나주 홍기응·홍기헌가옥(중민 151, 161)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무안 유교리 고가(중민 167) 목재담장 설치	공개			
15	율현동 물체당(중민 174) 주변 경로당 신축	공개			
16	하리동 일성당(중민 178)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7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민 266) 주변정비 및 전시관 신축	공개			
18	고창오거리당산(중민 14) 주변 주막거리 조성	공개			
19	장흥 신와고택 및 오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공개			
【검토	로사항】				
20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문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공개			
21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공개			
【보	【보고사항】				
22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공개			
23	경주 양동마을 문화유산지식콘서트 개최	공개			

심의사항

1. 논산 백일헌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논산 백일헌 종택」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 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2년도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12.08.06)에서 충남 민속 문화재 제7호「이삼장군 고택」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후 지정예고기간(만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 심의를 상정한 사항임
 - 지정예고기간 : 2012.08.23~2012.09.21(만 30일)
 - 제출의견: 지정검토 당시 명칭을 「논산 이삼장군 고택」으로 하였으나 휘(諱)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직급을 나타내는 장군이란 호칭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호인 백일헌(白日軒)을 사용하여 「논산 백일헌 종택 (論山 白日軒 宗宅)」으로 함이 타당함(소유자 및 논산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논산 백일헌 종택(論山 白日軒 宗宅)

ㅇ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번지

ㅇ 소유자 : 000

○ 수량: 일곽(건물 3동, 토지 3,353㎡<1필지>)

- 건축물 지정 3동: 본채(조선시대, 목조와가, 팔작지붕, ㅁ자형), 사당(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3칸×측면 2칸), 대문채(목조와가, 맞배지붕, 정면 5칸×측면 1칸)

- 토지 지정 면적 : 3,353 m²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m²)	지정(m²)	소유자	비고
상월면 주곡리	51	대	7,308	3,353	이신행	지정구역

○ 지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논산 백일헌 종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

-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 별첨
- (2) 현지조사의견('12, 04, 26) : 붙임1 참조

<000·000 문화재위원>

○ 백일헌 이삼장군의 인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며, 그에 걸맞게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뛰어난 280여 년의 역사를 갖는 한옥을 구성하고 있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사당, 문간채 등의 공간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안채의 의장이나 구조는 건축적으로 대단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유구이다. 또한 이삼장군의 초상화 및 가치 있는 관련서적과 관련유물이 소장 되어 전수되고 있으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000 문화재위원〉

- 호서지역의 대표적 무반가문의 상징적 인물인 이삼 장군가의 역사, 관련 다양한 유물 자료로 문화사적 특성이 비교적 소상하고 명확하게 파악되는 유적이며 고택의 보존 상태가 양호함
- 무반가의 고문서와 유물은 매우 중요하여 이미 고궁박물관, 중앙박물관, 장서 각 등에서도 전시할 정도이며 특히 이들 유물자료와 연관유적으로 백일헌 영 당과 묘소, 마을의 경관 등등이 연계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좋을 것이라 사료됨

(3) 현지조사의견('12. 05. 07)

〈000 문화재위원〉

○ 고택이 있는 논산 주곡리 마을은 장승제, 연합두레 등 민속문화가 전승되 던 지역으로 관심이 될 만하며, 이삼장군 관련 유물자료, 고문서류 및 불 천위 등은 장군 및 가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는 유물자료 만이 아니라 민속 생활문화 분야를 보고서에 추가 하여 온전한 민속문화재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함

〈000 문화재위원〉

- 유물(이삼 장군)과 함께 후손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민속유물) 및 이 가문과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정리
- 잘못된 건축부분을 반드시 고칠 것(宗婦의 출입문이나 담장높이는 건축사는 물론 여성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
- 유물(장군 것이라고 하는 것과 家傳을 구분) 및 가문의 생활사(衣・食 및 儀禮・家家禮)에 관련된 유・무형의 민속재조사 필요

(4) 조사자의견: 충청남도 000, 000 위원

- 1700년대 초에 건립되어 약 300여년간 창건대의 고택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상류 고택의 구성 요소인 안채와 사랑채, 사당채, 광채, 그리고 행랑채 등이 튼ㅁ자형을 이루면서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배치되어 있고 고택 내의 영역구성 수법이나 동선체계, 그리고 건축 구조적·양식적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이 고택 주변에 있는 명재 윤증고택이나 사계 김장생 고택 뿐만 아니라 돈암서원, 노강서원, 종학당, 충헌사 등 많은 유교 문화와 연계시켜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교육 중심지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논산지역에는 백일헌 이삼장군과 관련하여 묘소, 영당 및 관련 유품(언월도, 철퇴, 영정과 은잔, 전적, 고문서, 생활용품 등)이 전해지고 있어 백일헌 이삼 장군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후세에 되살리고 전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5) 000 의견

○ 영조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해 하사한 백일헌 고택은 280여년 의 역사를 지니고 본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건축사적 가치 또한 매우 크며, 논산시 전역에 이삼 장군과 관련한 유적과 유 물 그리고 설화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문화유산의 본질을 유지 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七 뱚흶죎 즧멺

- 쨳잶봞슯뱚흶죎

Ø 뱚흶죎 뮧쾏

- 늞쇒 좖쇞죇꺒 긂퇿

OE 좧쫢 휦힋 봱 윏쇎뱚흶흺귟

늘쇒 좖쇞죇꺒 긂퇿졢 컋뇊 늘쇒쏾 쨞긃뫎 51붪쫢웲 젦콺홾됆. 쨞긃뫎뎶 좲윒뫪졦좚 젹롚·왦뢺롚· 뫿괢뫎웲 괣괣 췏쨞욳왊·횊퓫좖왊·줦쨞좖왊괢 좧훇횖 5뵓윎 뉦 줦뺢퉒 횊꿺 쇖긂 좪뎶 졂꺎홾 윏쇎 졺 줦틗뫪졦륾숾.'썂긊'좖뢞긂 뺢몖둺 긕좖됆.

귦먃쇒졦 증즧쇒졞륾 홿윎 묆븫쇒졦 쨞쇒졞륾 홿긂 욀듻쇒졦 왪쇒졞륾 홿윢졞뮒 괢읇 욀 줦됗웲 윒믝졦 괸캶긂 좪둺 줦휷줣좚 증쉂쏾됢 뵒쇒좦쌺휷졺 왦됖홾 꽚쫢좖됆. 귦먃쇒졢 긂쨢홾 쇒좖쫢뫺, 괢읇좖 젦콺홾 묆븫쇒 왦뢺륾뎶 꺎몫좖 좳긂 왦됖홺윎 픎꼞홾 꽚쫢몞 휷쉓홿뎶 휷꺏좖됆.

좖쇞죇꺒 긂퇿졢 왪쵦읢 쇎뢳쵦륾 꺎쉓딾 븚쵦몞 쨳쐎졞륾 됢뱚쵦읢 쇎됛, 꼚뫎긂 뷢슮 똓 뉆 쵦졺 궖뱞륾 꺎쉓딺뮒, 쇒좲뢟졺 귟쇎쫢웲 젦콺홾됆. 됢쫢뎶 뇊뺣뵋훇졞륾 샲 왦돪뢞 듻숾뵋훇졞륾 귟쇎괢 좪됆.

긂퇿 뇖웲뎶 쌺륛좖 읆뢾 졢횫놺뱖, 푟놺뱖, 괲놺뱖 똓졺 줷쟲쌺괢 뫰됆. 쇎됛 뗆웲뎶 믊긞놺뱖괢좪졞뮒 봶꾇쇎뢳쵦 욀웲뎶 뷟읆듻놺뱖괢 쉚 꼚먊 좪웪됆긂 줦횛쫦됆. 꼚뫎긂 콃뷟놺뱖, 됢놺뱖, 훇놺뱖, 죅놺뱖 똓졺 줷쟲쌺괢 좪웪됆긂 홾됆.

좖쇞 죇꺒 긢륊 졂줣졞륾 윣됛(樹炚)긞 밺슮(冬驚)괢 쨞뷢웲 좪됆.

○ 윒휣·졂뢺 봱 폛쫷

좖쇞(葉尾: 1677-1735) 졺 븚긢졢 횊퓫좖뮒 컋췏듦 늚쉓휦(휦 늞쇒쏾 쇣쟶뮖 쨞긃뫎) 캾쐂졞륾숾, 즒쉂 쌻즧 즒웲 죇쟲꼫줾 ″ 귟즧긞 윣즒 됢웲 좖몖꽒꽮쫢 뱚뱖긢쫣졦 땲먊 윏좦홾 긢맮좖뮒 꺒쇎쫢룗긞 뱖윪, 꺒붷, 꺒줾웲 즒윪괢 꽬웪긂 뱖꽒졺 줾좳웲듦 렒웖놾 꽒썂졦 괢쥮둺 좚밦좖됆. 쌻즧, 귟즧, 윣즒 쉚 좦꼪졦 믊쏾뮖숾 흞뢢쏆뤎쟖 줷콺줣 쇣힋긞 윎뤎 붪졺 됛퐮쐚쟢졺 흞뢢 슯웲숾듦 뱖좚졺 꽚졦 쫢퇆뮒 긗긞 쇎몞 웦귋ᄆ 꺎뺦홾 궥졞륾 졂뮧홺됆.

좖 괢읇졺 궖뱞졢 휦죎 됢뱚쵦, 븚쵦, 쇎됛, 뺢슯쵦(뷢슮읢 긳)륾 좖먊웖쥚 좪됆. 1908뉦졺 흶죎륾슮쐆딾 됢뱚쵦읭 븚쵦 잚긟졺 쇎뢳쵦 좞뺢몞 죎캷홾 좖끼 휦즖홺뎶 궖뱞웲뎶 뷦됆몚 뷢흶뎶 웨뎶 궥졞륾 쇎맮딾됆. 꼚뤎놺 됢뱚쵦졺 율졞륾 뵋왹괦좖 좪둺 긳쵦괢 웨웖쥮졞뮒, 븚쵦졺 숾콃웲 좪뎶 뷢슮율졺 훽괦, 퉥뵏 욀졺 뷦됛좖 웨웖쥮됆. 좖 뷦됛졢 뺢웮, 왪뵋, 쟥뵋 똓 쉚 쾚졞륾 꺎쉓딺웖 좪웪뎶뒒, 좖 궖뱞웲숾 휦 즧슲졺 즒뺢괢 쐂줳쇖뫞젮 홺윢됆긂 홾됆. 좖 궢뱞졢 1985뉦 귟 췂궒딺웖 휦죎뇊왦 좪쫢 왬돼. 뜲홾 죇듧됢웲뎶 쫼졞륾 뒐졢 웦쫳좖 좪웪돼. 좖쇞죇꺒 긂퇿졢 1995뉦귟뺢퉒 궒쨞홺쫢 왝긂 뽦웖 좪뎶 쉯퇾됆.

좌쇞죇꺒 긍퇿졢 쵟궖쐀졺 쟲흓젮 뽦깲줣 좺 괦쫣핾긂 좪졞뮒, 폛ᄆ 증쉂 쇣명 쨞퇿졺 꺎쉓 잶슮 좚 왪쵦읢 쇎뢳쵦괢 ☞좲흓졦 좖먊긂 쇎됛, 뱚괦쵦 똓좖 쨞뷢 좲윒흺귟긞 좺 증흥딺웖 좪긂 괢읇 뇖 졺 긗괦꺎쉓좖놺 듻쉂췖귦, 꼚뫎긂 궖캷꺎즒놺 욳쏿좖 "몏홺윎 줦췖줣졞륾 홾읇졞륾숾졺 윪썂줣, 꽒 쌊줣 꽒햯좖 됢됖ᄆ 롥웕놼됆.

최좞훮 좖쇞죇꺒긞 긢륊홺윎 밺슮, 윣됛 잚웲듦 괢읇웲 줦횖 뇖륆읆뎶 졂꺎괢 뫰됆. 폛ᄆ 최좞훮졂쫳(盧銳總餘蔣) 잚 뫰졢 숾줣졢 꼚 괢콺괢 늴긂, 졢좶 잚 뫰졢 졂꺎똆졢 껢짻홾 졂뱞좖됆. 웚쟶듦(舌壤敎), 췂팖(摺湊), 췂궢(摺홿), 졆쉂(年紡) 잚 뱖긢(痘흌) 긢륊졂뱞똆좖 됢됊ᄆ 뫰됆.

괢읇웲뎶 쇎됛좖 좪긂 줾쇎, 괢륢 똓졺 햯슯좖 줦횛쫢뮒 듻뇖 좧꺎웲뎶 춾홺됢죇꺒, 쫢홺윎죇꺒좖 쉚쟮쥚 묆뉦 죇쏛줾괢 좖웕쥙 읆긂 좪됆.

p 쫢줷 괢콺 봱 꼞궒꽒쨢

[궖캷줣 괢콺]

1. 왪쵦

뵒콺휷퇾뎶 왪쵦읢 쇎뢳쵦괢 ☞좲흓졞륾 븚쵦몞 꺎쉓홺긂 좪됆. 홾읇졺 쇿흾 꽒돇좖 됆욳홺궮 꺎 쉓딺웖 좪긂, 봶꾇쇎뢳쵦, 왪쇎뢳쵦 똓좖 꺎쉓딺웖 좪웖 쇎됢(耗傀)괢 홾 쫳웲 꽒궒홺뎶 줦휷줣좚 줦 틗홾읇졺 쨞궒꽒돇졺 됆욳쉓졦 븖윎쨞긂 좪됆.

왪쵦뎶 좲윒숿 꽒됊 젦웲 뒆붻쨞츪몞 늵긂 뉆믊꽒떇졦 쉚쟖 봞듦뫎쫳졞륾, 쫢뺷괢꺎뎶 즧룫 젦웲 줾휷됢긗졦 쉚쟮 즧듦뫎몞 봽뎶 1긂쨞 5룫괢좖뮒. 쫢뺷졢 흳춺뫪 퐶좳쫳좖됆.

新쇞죇꺒 긂퇿졺 쨳쐎좚 븚쵦졺 줦췖줣좚 휷퇾뎶 ☞좲휷좖놺 뉆 뮖좖 좞줷홾 ☞좲휷 꺎즒췖괢 왦 돪뢞, 홾쯟 뇂괾쵦괢 쬉졢 텉좲휷졺 왪쵦몞 쨳쐎졞륾 쬉졢 좞좲휷졺 왪쇎뢳쵦, ◐좲휷졺 봶꾇쇎뢳쵦, ◐좲휷졺 긳쵦 똓 뉆 괾졺 쵦괢 귒횋홺윎 좖먊웖쫦 ☞좲휷 쫳좖됆. 컋췏쫢윏졺 ☞좲휷 홾읇졢 홺놺졺 꺎즒췖륾 ☞좲몞 좖먊꽒븖됆뎶 뮩 괾졺 꺎즒췖괢 귒횋딺웖 ☞좲휷졦 좖먊뎶 귟쟒괢 뫰됆.

왪쵦졺 됢췏뫪먊 쇣됊졺 됢똆븖웲뎶 쏾뤣좖 좪웪둺 ⁻ 줣좖 뇊왦 좪졞뮒, 폛 ⁻ 쌺뇋쏾쉆좖 좺 꺎쉓 딺웖 좪됆.

왪쵦 퓫뮖졢 目좲휷졞륾 듻콃빪뎶 뺢웮긞 왪뵋, 쟥뵋졞륾 꺎쉓딺웪됆. 숾콃뺢뎶 궖눮뵋졦 놾뵋홺뎶 좳졢 뺢웮긞 궖눮뵋졞륾 좛먊웖쥮됆. 왪쵦뎶 줦팖쫳 휷쏿졺 숾콃뺢몞 줾잚홺뮖 긗괦좖 땲 퀾륾 꺎쉓 딾 귛쫳좖됆.

爾휷 퓫뮖졦 좖먎 왪쵦읢 쇎뢳쵦뎶 궖캷꽒썂졺 됆욳쉓긞 쟒쌺쉓졦 븖윎쨞긂 좪졞뮒, 컋췏쫢윏 홾읇폛쉓졦 놺퇢뇖뮒, 좲윒쫢휷웲 쌾졳홿뎶 줦틗홾읇졺 폛쉓졦 좺 븖윎쨞긂 좪됆. 궖캷졺 괢꺎꺎쉓꽒 붷좖 됆욳홺긂 콺믋꽒붷좖 즒쉂쏾됢 ″꽒 쇣멺쨞퇿졺 꽒붷졞륾 쌺쨢 늴졢 궖캷꽒썂졦 븖윎쨢됆. 즒 쉂쏾됢 홾읇졺 궖캷 귦/줣, 꽒썂줣 쟒쌺쉓졦 븖윎쨞긂 좪졞뮒, 윪썂쉓긞 봚줣(卵宇) 괢콺괢 늴됆.

2. 쇎뢳쵦

쇎뢳쵦뎶 봻꾇쇎뢳쵦(諄壤要: 왥룍쇎뢳쵦)읡 왪쇎뢳쵦(搭寮月; 좳졢쇎뢳쵦 흛졢 젹쇎뢳쵦)륾 꺎쉓 딺웖 좪졞뮒 왪쵦읭 윒귒딺웖 좪됆. ☞좲휷졺 븚쵦뎶 뉆 괾졺 쵦륾 꺎쉓딺웖 좪뎶뒒, 왪쵦읭 왪쇎뢳 쵦졺 텉좲휷웲 봶꾇쇎뢳쵦읭 긳쵦졺 텉좲휷좖 윒귒딺웖 ☞좲몞 좖먊긂 좪됆. 봶꾇쇎뢳쵦뎶 ●좲휷졞 륾 홾 쾚졺 쨳뱚괦긞 홾 쾦졺 댦뫪먊, 꼚뫎긂 땲 쾦졺 쇎뢳뵋졞륾 꺎쉓딺웪됆. 왪쵦읭 봶꾇쇎뢳쵦몞 좩뎶 긳쵦뎶 ●좲휷졞륾, 4쾦졺 긳긞 홾 쾦졺 뱚괦, 꼚뫎긂 봺 쾦졺 좳졢 긳졞륾 꺎쉓딺웪됆. 꼚뫎긂 쫢뺷 늴좖듦 왪쵦, 왪쇎뢳쵦, 봶꾇쇎뢳쵦, 긳쵦 쌾졞륾 즒꼪왋 뇐궮 읎뫎긂 좪됆. 왪쇎뢳쵦읭 봶꾇쇎 뢳쵦 줦뮖웲뎶 댦뫪먊몞 뫮똆웪긂, 땲 쇎뢳쵦 쇎좖웲뎶 왪뫪됛졞륾 똆웖괢덾 쨳뱚젮 땲긂 쇣뺘웲 쇖 뱚졦 쉆콺홺윢됆.

좖쇞죇꺒 긂퇿졺 쨞 폛쫷졢 쇎뢳쵦괢 왪쇎뢳쵦읢 봶꾇쇎뢳쵦졺 땲 쵦륾 꺎쉓딾됆뎶 줲좖됆.

3. 쇎됛

쇎됛졢 좖쇞죇꺒 쫣귦졺 쨞괢 딺뎶 쇎됛긞 좳졢 쇎됛좖 홾 퓫뮖웲 뵒콺딺웖 ^르봚륾쟖 꺎쉓꽒붷졦 븖윎쨞긂 좪됆. 홾 쇎됛 왪웲숾 땲 괾졹 윣윏좖 꺎쉓딺뎶 윪뎶 ^ᄅ홺쫢 왬졢 궥좖됆.

4. 됢뱚쵦

쇖뱚졞륾 딾 됢뱚쵦뎶 슮쏎쇞뱚졺 줦휷줣좚 휷퇾몞 븖윎쨢됆. 폛ᄆ 됢뱚쵦웲숾 븖뮖 봶꾇쇎뢳쵦읭 왪쇎뢳쵦. 쇎됛좖 횊꿺 괾뵋줣졞륾 븕좖뎶 궥졢 폛좖홾 윪좖됆.

[봞슯졂휷줣·뱖휷줣 괢콺]

좖쇞죇꺒 긂퇿졢 1995뉦꽮쫢 즧슲좖 쇖뫞졦 홺뎶 쨞궒륾숾 쇎쟋딺웪됆. 괢읇웲뎶 쇎됛좖 좪긂 줾륢 믊쏗좖 줦횖쫢뮒, 즒쉂쏾됢 쇎됢뺢졺 쇿흾쇣졦 좺 괦쫣홺긂 좪됆. 꽒줾(虔由), 쵊륢괢 좖웖쥚 읆긂 좪졞뮒 괢졦웲뎶 쏾줾몞 쫢뇚됆. 윽뇂웲뎶 죇듧됢웲 웦쫳좖 좪웪됆.

쨞긃뫎 좧꺎웲뎶 춾홿됢죇꺒, 쫢홿윎죇꺒좖 쉚쟮쥚 묆뉦 죇쏛줾괢 좖웖쥚 읆긂 좪됆. 좖 뫪졦졺 죇 쏛졢 1498뉦(윒쇒꺒4)웲 췏쨞욳왊 9쉚슲좚 욳캺궖좖 놻훇홿윎 뫪졦웲 줷쵋홾 7 쐂왻졦 틗횖숾 쨞 봞졺 흻횋졦 듦믊홺꽒 젦홾 뵋쵧졞륾 뫪졦좧꺎웲 쉚쟖 궥졞륾, 꼚 7 뫪졦쨞봞똆졢 죇쏛졦 뫪졦졺 쌺흚쐂졞륾 썏뵒홺꽒 쏾좳횪됆긂 홾됆. 뫪졦졺 햯쏗좚 듻줾읢 듻줾됛좖 븖즖딺긂 좪웖 즧괢읢 줦틗 뫪졦좖 횊꿺홿뎶 봞슯똆좖 좺 줦쏛딺긂 좪됆.

괢읇웲뎶 줦횖 뇖륆읆뎶 졂꺎괢 왬됆. 펣ᄆ 뵓좞훮졂쫳(盧銳總餘蔣) 잚 왬졢 숾줣졢 꼚 괢콺괢 늴 굶, 꼚 잚 왬졢 졂꺎똆졢 껢쨳홾 졂뱞좖됆. 좖쇞죇꺒 긢륊졂뱞륾덾 웚쟶듦(舌壤敎), 췂팖(摺溱), 췂궢(摺홿), 졆쉂(年紡) 똓졺 뱖긢(痘흌) 긢륊졂뱞똆좖 좪됆. 뜲홾 긗쐂졺 쵧븫긞 긢륊홺윎 깲숾(힄瘕), 쇎 푊깲쫢(毋徵힄立) 잚웲듦 츪쇣흶(鼎美拓), 웖줾웖홦(蟬紐蟬斥), 졢뵒(煉鈴)괢 줦횖쫢뮒, 봢뺢졂숾(拉摩艅瘢), 긗쐂깲숾(휬祀힄瘢), 뺦뱖쟲즧긗쐂늛꺮(萬痘鶯膺휬祀藁諫), 21긗쐂ㄱ묛륿(殮索詣휬祀頹袋拿), 횊졢꺒 쏾죇(簽漣干 使畏), 쇎줾뱚(毋由藤), 긢뺣듦(흙晚橋), 쇎뮧꽒 뷳핷(瑁悼鍵 累冊), 쇎뮧췋(瑁悼征), 졆쉂(年紡), 졢쌺줢(煉嚬榕), 숾괦췋(瘢혀征), 좖쇎꽚 괦쵒(葉牧鉗 혀箸), 뵓좞훮 휦퐲(盧銳總 椎秩) 잚 왬졢 졂꺎괢 좪됆.

즧괢웲뎶 줾꽒. 줾쇣. 훇륾. 츽됢. 죇릓. 횊. 뗆쨞. 뫲 똓 봞슯햪좖 븖긢딺웖 좪됆.

T 쫢줷 됢쇣 봱 붶젦

왪쵦, 쇎뢳쵦, 쇎됛, 됢뱚쵦 똓졦 좞긦홿뎶 늞쇒 좖쇞죇꺒 긂퇿졦 뱚흶죎륾 쫢줷횖욞 횂 궥좖됆. 듻쏾웲 즧퇿졦 꺎쉓홿뎶 궖캷뱞 잚웲 휦죎 뇊왦 좪뎶 줾봺 졂뱞똆졦 좞긦홿윎 쫢줷횊좖 퇢됛횂 궥좖 됆. 봞슯졺 뱖흓줣 잶슮몞 픎긦홿윎 쫢줷횊좖 봶뢮쫣횂 궥좖됆.

b 뱚흶죎 븖즖 윣훇 횫젦꽒쨢(왪)

틂쫭됢죇웲 좖쇞죇꺒 긍퇿졺 됢쫭(쨞긃뫎 51붪쫢)뎶 7,308—륾 꽒죎딺웖 좪됆. 됢쫢졺 쫭윏·쫢꺎쫢줷 휦힋졦 쇖퓖븖뮖, '귦기긢뫎쫢윏' 좖뮒, '뱚흶죎 븖흚꺎윏'긞 '쏾듦쫢줷밢흶죎꺎윏'졞륾 쫢줷딺웖좪됆. 컋췏뇊듦 쫢줷뱚흶죎좚 좖쇞죇꺒 긂퇿졢 '뱚흶죎븖흚붷', 꼚뫎긂 컋췏뇊듦괢 줾줷홾 '컋췏뇊듦 쫢줷뱚흶죎 븖흚즒륢'의 '컋췏뇊듦 쫢줷뱚흶죎 븖흚즒륢'의 '컋췏뇊듦 쫢줷뱚흶죎 븖흚즒륢 쏾횫껾콻'웲 뙒뢞 꼚륾뺢퉒 500m 좖뇖졺 꺎윏웲숾 궖캷횫젦몞 횂 귟쟒 휦쇣뷢귟 훪괢몞 봽듦륿 딺웖 좪됆. 쐂췏 븖긂숾졺 뇖쟋긞 괻좖 쏾횫홺윎듦 뱚흶죎 봱 쨞뷢귟긢 븖즖웲 톒 뱖뫎괢 웨졦 궥졞륾 쇎맮딾됆.

븖즖줷뽦 봱 흾쟋 쵋왪쇎횏

쇎뢳쵦괢 흶죎륾 슭쐆딾 궥졦 쟲뢺됢륾 븗쟲홺윢졞뮒 왪쵦뎶 쵟궖됛쏾 꼚됢륾 뇊왦 좪됆.

왪쵦졺 숾꽮뢺뎶 2011 뉦웲 쇪륾좖 괾쌺홺윢됆. 뇖뺢괢꺎뎶 꼚됢륾좖됆. 왪쵦 꽒됊졢 좲윒숿졞륾 딺웖 좪웪졞놺 븖쌺딺웖 쟲흓좖 뷢흓딺웪됆. 왪쵦졺 꽒됊긞 귦됊, 왪쇎뢳쵦 꽒됊웲숾졺 귦됊 똓좖 쟲흓 졦 좥긂 좪뎶 뺢뺦좖됆. 윎꽒웲 됢횛숾뎶 쟲흓됢륾 캶기 븗쟲딺뎶 궥좖 봶뢮쫣횂 궥좖됆.

뷦됛졢 휦죙 웨졞놺 쟲뢺졺 좲뫎웲 븗쟲딺뎶 궥좖 봶뢮쫣횂 궥졞륾 쇎맮딾됆. 됢뱚쵦 율웲뎶 뵋왹 괦좖 좪웪둺 긳쵦졺 퉒괢 뇊왦 좪됆. 캶기 븗쟲딺뎶 궥좖 봶뢮쫣횂 궥좖됆. 봻꾇쇎뢳쵦 봻꾇졞륾뎶 횫뢳쵦괢 좪웪졞놺 쫢꼪졢 뇊왦 좪쫢 왬됆.

뱖휷줣 봞슯잶슮똆졦 줦쏛쐃퇆긂 깲졃쐃퇎 쌺 좪뎶 흾쟋귦기졦 쌺뫟홺긂 좪됆. 칾꼞 즧슲졺 쫢됢홾 긢쐎 슯웲 욀졞륾 줦틗홾읇 쌻봷췖훺 봱 춾윒윞쇫 똓졺 줦틗긗윪췖훺졦 뽦릑홺윎 됆욳홾 븖줦 혦 륾꼚룊졦 쟖윣횂 귥기좖됆.

즧횋 졺귎

쟒쉂 뵓좞훮 좖쇞죇꺒졺 좚밦륾숾졺 윏쇎줣 괢콺괢 됢됊ᄆ 늴졞뮒, 꼚웲 궚묀궮 윪썂줣, 꽒썂줣 괢콺괢 렒웖놾 홾읇졦 꺎쉓홺긂 좪웖숾 꺏괢쫢줷뱚흶죎륾숾졺 괢콺괢 컋뺦홾 궥졞륾 쇎맮딾됆. 늞쇒좖쇞죇꺒 긂퇿졢 280윎 뉦졺 윏쇎몞 괸뎶 줦틗홾읇졞륾숾 쵟궖 됛쏾졺 쟲휷졦 뽦깲줣 좺 괦쫣홺긂좪졞뮒, 왪쵦읢 쇎뢳쵦, 쇎됛, 뱚괦쵦 똓졺 긗괦꺎쉓좖 됆욳홿긂, 폛ᄆ 왪쵦졺 졺죇좖놺 꺎즒뎶 궖캷줣졞륾 됢됊ᄆ 윏쇎줣 괢콺괢 늴졢 껢쨳홾 졂꺎좖됆. 좖 긂퇿졢 홾읇졞륾숾졺 윪썂줣 괢콺괢 렒웖놺긂 궖캷꺎쉓꽒붷좖 됆욳홺긂, 궖캷꽒썂좖 즒쉂 됛됢 칾긂졺 쌺쨢웲 좖몖뤎 좪됆. 뜲홾 슮죇딺웖 줦쌺딺뎶 좖쇞죇꺒졺 츪쇣흶 봱 괢콺 좪뎶 긢륊숾줣긞 긢륊졂밦좡 됢됊ᄆ 뫰됆. 좖 괢읇웲뎶 쇎됛졦 뽦릑홺윙 괢륢, 줾륢 똓좖 줦쌺딺긂 좪졞뮒 듻뇖웲뎶 듻줾괢 좖웖쫢긂 좪됆.

쨳잶봞슯뱚흶죎륾 쫢줷딺웖욞 횂 껢쨳홾 졂꺎륾 쇎맮딾됆.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부용대 안전난간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부용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후 부용대에 올라 하회마을을 조망하려는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난간을 설치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산22-3 일원(부용대)
- (4) 신청내용 : 부용대 안전난간 설치
 - o 구 조 : 목재난간(35경간)
 - 크 기 : W1.5m × H1.2m
 -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부용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안전확보 필요성은 있으나, 경관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안전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부용대는 마을의 중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로 난간을 설치할 경우 고유의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설치 시에 암반 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ㅇ 부결
 - 부용대 원형훼손 우려(이용자 안전 고려, 전문가 자문 후 경관저해 없는 안전시설 설치 권장)

3. 안동 하회마을 입구 종합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입구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관광·지리·교통 정보를 제공하고자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74-3(하회관광단지)
- (4) 신청내용 : 종합안내판 설치
 - 구 조 : 한옥형 안내판(H=3.24m, W=5.46m)
 - 대상문화재의 관계:1구역(이격거리:300m)

라. 검토의견

○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종합안내판의 설치는 필요하나, '민속마을 공공디자인 개발('11.11, 활용정책과)' 가이드라인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안내판의 위치는 적절하나 형식은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므로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재검토하도록 함

- ㅇ 조건부 가결
 - 안내판 가이드라인과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형식으로 함

4.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 음식점을 하기 위한 신축공사를 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민속분과 제4차 회의('12. 8. 6.)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구조, 높이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ㅇ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716
-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음식점 신축
 - o 대지면적 : 1,784m²
 - 건축면적 : 271 m²(가동 72.88 m², 나동 198.12 m²)
 - 구 조 : 석구조. 건축높이 : 5m
 - ㅇ 용 도 : 일반음식점
 -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 지정구역

구 분	기존신청('12. 7월)	변경신청('12. 9월)
구 조	경량철골조	석구조
규 모	271㎡(가동 72.88㎡, 나동 198.12㎡)	변경사항 없음
형 태	지붕 기와, 벽체 드라이비트 마감	지붕 FRP 초가, 벽체 제주현무암 막쌓기
높 이	5.52m	5.0m

- 동 사업의 신축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이며 지목상 전으로 신청한 용도 (음식점)와 위치는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2011년도 2차 위원회 시 유사한 안건으로 부결된 사례가 있음('11. 4.)
 - 부결사유(민속마을 초입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로 마을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패소(2012. 6월)

마. 참고사항

- (1) 제4차 심의 시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7.25)
 -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용도 및 전통마을경관에 영향을 주므로 허가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 000 의견

○ 본 건은 2012. 7. 9.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지붕 기와, 벽체 드라이비트 마감, 높이 5.52m)하였으나 2012. 8. 6. 문화 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됨에 따라 금회 당초 신청하였던 내용을 변경(지붕 FRP 초가, 벽체 제주현무암 막쌓기, 높이 5.0m)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5. 성읍 민속마을 내 농협하나로마트(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농협하나로 마트(소매점)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읍 민속마을의 주민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바로 옆 인근에 소매점 1동을 신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민속분과 제4차 회의('12. 8. 6.)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내용(구조, 면적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ㅇ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1) 신 청 인: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02-1, 603-1번지
-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농협하나로마트(소매점) 신축
 - 소매점 증축 : 145.80 m²(기존 52.89 m²)
 - 기존 초가 개보수 : 39.37m²(기존 39.37m²)
 - ㅇ 구 조 : 소매점(목구조). 기존 초가(목구조)
 - 기 타 : 기존 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주택 위치에 계획, 현존하는 초가는 보수 정비하여 창고로 활용하며, 소매점은 전통초가의 외관 및 형태로 계획함
 -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지정구역

		1차 신청(2012년 7월)	금회 신청(2012년 9월)
건물의	'가'동(마트)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구조	'나'동(창고)	목구조	목구조
건물의	'가'동(마트)	160.38 m²	145.80㎡ (14.58㎡, 10.0% 감소)
규모	'나'동(창고)	$39.37\mathrm{m}^2$	변동없음
지붕형태		불소알루미늄 재질	변동없음

- 재신청한 건축구조는 목구조로 변경하였으나, 지붕틀구조 및 면적 등은 성읍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과 맞지 않아 문화재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성읍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2007년)
 - 건축구조
 - 지붕틀구조는 제주전통초가의 지붕틀구조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마. 참고사항

- (1) 제4차 심의 시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000 / 2012. 7.25)
 - 성읍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조는 목조건축, 면적, 높이 등)

(2) 000 의견

○ 본 신청건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소매점 영업시설로서 '12. 8. 6.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제4차 심의결과 성읍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된 바 있는 건으로서, 금회 소매점 면적은 축소(당초 대비 14.58㎡감)하고 외관은 성읍민속마을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관과 유사한 형태로서 지붕재질은 이전과 동일한 불소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에 따른대응방향과 민속마을 보존방향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부결
 -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위배, 문화재 경관 저해

6. 성읍 민속마을 내 화장실 및 정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민속마을」내 화장실 및 정자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성읍 민속마을 내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의 건물을 기존 창고시설에서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화장실 및 정자를 신축하여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 ㅇ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48-1번지
- (4) 신청내용 : 성읍 민속마을 내 화장실 및 정자 신축
 - 건축면적 : 22.64m²(화장실 8.64m², 정자 14.0m²)
 - ㅇ 구 조 : 목구조, 높이(화장실 3.35m, 정자 3.55m)
 - 건물 용도변경 : 기존 창고(1,2,3동 각 32m²) → 소매점
 - ㅇ 대상문화재의 관계: 지정구역

○ 동 사업의 신축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이나 지정구역 경계지점 인근에 위치 하여 성읍마을의 성곽으로부터 많이 이격되어 있으나, 신청한 건물의 신축은 민속 마을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신청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대상 토지내에 기존 초가건물 3동(창고)을 용도변경(소매점)하고, 화장실과 정자를 신규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성읍민속마을 내 향후 전개될 경관 및 민속마을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ㅇ 부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마을보존협의회 의견 수렴 필요. 문화재경관 저해

7. 경주 양동마을 주변 광고입간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주변 광고입간판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신청인은 양동마을 주변에서 민속한과 광고입간판을 설치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이에 따른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산41-1번지

(4) 사업내용 : 광고입간판 설치

○ 설치규모: 900 × 1,800

○ 대상문화재의 관계:1구역(30m 이격)

라. 검토의견

○ 광고입간판의 설치 위치는 양동마을 진입로에 있으며 문화재경관 및 향후 양동마을의 저잣거리 조성 연계하여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 2012. 9. 7)]

- 신청위치는 양동마을 진입 초입에 위치하여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입 간판 설치로 인하여 민속마을로써의 문화재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동마을의 저잣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문화재 보존·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ㅇ 부결
 - 민속마을 내 상업용광고판은 바람직하지 않음

8.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주변에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진접 여경구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3구역 :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1m(2층) 이하 주택 신축·증축 허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진접 여경구가옥」
 - ㅇ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10-1(이격거리 : 140m)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304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87.84m² / 160.87m²
 - 규모 및 높이 : 지상 2층, 8.85m(평지붕)

라. 검토의견

○ 신축예정지와 문화재 사이에 능선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문화재보다 낮은 좌측면 으로 수목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주변에 1층~2층 규모의 주택들이 있음
- 당초 현상변경허용기준 내로 건축허가(높이 8m이하)받아 공사 진행 중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 건축물 최고높이(8.85m 옥탑포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9. 궁집 주변 근린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 「궁집」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궁집」주변 근린공원 조성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30호「궁집」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426-1 외
- (3) 신청위치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60, 산 27, 산 27-2(이격거리 : 90m)
- (4) 신청내용 : 공원조성
 - ㅇ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잔디광장, 주차장, 정자 등

라. 검토의견

- 궁집 주변 근린공원 변경(안)은 기존의 공터 및 공원을 재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속분과 4차 회의 시('12. 8. 6) 검토사항으로 가결되었음
-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남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허가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2012. 7.23. (민속분과 4차 회의 시)]
 - 궁집 일원 평내 2호 근린공원(화길옹주 묘역이전으로 인한) 변경(안)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상기 근린공원 변경(안) 마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기와가마터와 (기존)묘역공간의 경계부(비탈면)처리에 토사유출 등의 공학적 측면과 미적 측면을 고려할 것
 - 둘째, 시설배치계획 시 인근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익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할 것
 - 셋째, 변경안의 식재계획은 현존 식생조사를 기초로 외래수종, 식재밀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안)을 마련할 것

(2) 000 의견

- 기존의 근린공원(평내 2호)에 녹지면적을 추가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변에 지상 3층의 건축물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잘 보이지 않음. 공원 중심부에 궁집과 연관된 유적(화길옹주묘)이 있었으나, 택지개발 시 이장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으며 이번 계획에 그 부지를 편입하여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함
- 기 통보된 심의결과[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3123(2012.08.08.)호]에 의거 관계전문가 자문 및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형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10.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게이트볼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게이트볼장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찬판고택」
 -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708(이격거리 : 약 300m)
- (4) 신청내용 : 게이트볼장 신축
 - 대지면적 : 3,130 m²
 - 건축 / 연면적 : 499.3 m²
 - ㅇ 건폐율 / 용적율 : 15.95%
 -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경사지붕), 5.85m
 - ㅇ 구조 :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12.10.9.)

-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로부터 약 300m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문화재로 부터 조망되지 않아 허가 시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나 문화재 방향의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 방향의 수림대롤 존치하도록 수정·보완 도면 제출하였음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후우측으로 약 340m 정도 이격된 시계에서 벗어난 곳이고, 그 사이에 기존의 마을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림으로 형성된 자연 경관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재 쪽 수릮대를 최대한 존치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11.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2동)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 ※ 제3차 민속분과 위원회('12.6.4.)에서 동일 지번에 대해 단독주택 신축 허가

- (1) 신 청 인: 000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찬판고택」
 -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361(이격거리 : 300m)
- (4)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2동)
 - 대지면적 : 490 m²
 - 건축 / 연면적 : 82.8m²
 - ㅇ 건폐율 / 용적율 : 16.9%
 - o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4.65m
 - ㅇ 구조 : 싸이딩조립식판넬, 아스팔트슁글 지붕

- 신축 예정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 300m 이격되어 있으며 직접 조망되지 않음
- 현상변경허용기준상으로는 농업용 시설물만 가능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 주택이 당해 문화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의 뒤편으로 약 340m 정도 이격된 구릉지 너머 조망되지 않는 곳이고 단축주택이라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00 의견

 양강면 괴목리 361(전)번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김참판고택과 이격거리 300m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지역(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은 허용)이나 단독주택 신축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12. 영동 김참판고택 주변 양강 보건지소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참판고택」주변에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영동 김참판고택」주변 보건소 신축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과 2 구역이 걸쳐 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5m, 1층 이하)

※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평지붕 5m(1층 이하), 경사지붕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 (1) 신 청 인: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2호「영동 김찬판고택」
 -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401-2호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201-4 외 6필지(이격거리 : 236m)
- (4) 신청내용 : 양강 보건지소 신축
 - ㅇ 대지면적 : 853 m²
 - ㅇ 건축 / 연면적 : 232.42m² / 350.14m²
 - ㅇ 건폐율 / 용적율 : 27.25% / 41.05%
 - 건물층수 및 높이 : 2층, 8.5m
 -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보건지소는 마을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동 김참판고택 앞 큰 도로에서 사업예정지 옆에 위치한 양강 면사무소(3층)와 양강면의용소방대(2층)가 조망됨.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물의 규모(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됨

- ㅇ 조건부 가결
 - 건물 외관 및 건물 높이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 실시

13. 나주 홍기응 • 홍기헌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51 \ 165호 □나주 홍기응 \ 홍기헌가옥□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나주 홍기응·홍기헌가옥」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51·165호 「나주 홍기응·홍기헌가옥」
- ㅇ 소재지 :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0, 198
- (3) 신청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55-6(이격거리 : 약 480m)
-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ㅇ 대지면적 : 500 m²
 - 건축 / 연면적 : 90m²
 - ㅇ 건폐율 / 용적율 : 18%
 - 건물 층수 및 높이 : 1층, 5m
 -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판넬위 기와형 강판(경사지붕)

○ 문화재로부터 480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는 않으나 사업예정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면검토 의견대로 문화재 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계획을 보완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 (1) 서면검토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10.8.)
 - 이 위치와 이격거리로 볼 때 전통마을의 경관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전체적 경관을 위하여 마을 쪽으로 수목차폐 조경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000 의견

○ 문화재로부터 거의 500m 이격되어 있으나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검토 필요

-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 방향으로 차폐수목 식재계획 보완

14. 무안 유교리 고가 목재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무안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67호 「무안 유교리 고가」의 대문 채 옆 목재 담장 및 출입문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무안 유교리 고가의 문화재 손상, 화재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대문 채 옆으로 목재담장 및 출입문 설치를 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000
- (2) 대상문화재 : 무안 유교리 고가(중요민속문화재 167호)
 - ㅇ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698번지 등
- (3) 사업내용 : 대문채 옆 목재담장 및 목재출입문 설치
 - ㅇ 사업비: 20백만원(자부담)

라. 검토의견

○ 대문채 옆으로 목재담장 및 목재출입문 설치는 고증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12.10.08) : 문화재위원 000, 000]

○ 담장설치 위치와 형태에 관한 고증자료 없이 설계되고 형태가 기존 문화재와 조화롭지 못하므로 재검토 요함

- ㅇ 부결
 - 고증자료 부족, 문화재 경관 저해,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설계 필요

15. 율현동 물체당 주변 경로당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율현동 물체당」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율현동 물체당」주변 경로당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1구역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최고높이 7m, 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고유수종 식재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율현동 물체당」
- ㅇ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2
-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365-1(이격거리 : 약 140m)
- (4) 사업내용 : 경로당 신축
 - 대지면적 : 395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84.24m² / 82.98m²
 - ㅇ 건폐율 / 용적율 : 21.3% / 21%
 - o 건물층수 및 높이 : 1층, 6.2m
 -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경사지붕(한식칼라강판기와)
 -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제출('12.10.8.)

라. 검토의견

- 기존의 노후 주택을 3동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에서 우측 전면에 위치하고 있음
- 문화재에서는 사업예정지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는 않으나 사업예정지에서 는 문화재의 측면 일부가 조망되므로 현지조사 의견대로 차폐 수목을 식재 하도록 함
- 한옥형태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9.28)

- 문화재 전방 우축에 있는 마을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통 한옥형식으로 건립하므로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색채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하며, 문화재 쪽에서 차폐를 위한 식재를 하고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사로와 계단을 적절하게 보완 하도록 함

(2) 000 의견

○ 이 사업은 2011. 8. 8일자로 불허된 예천 율현리 물체당 마을노인회관 건으로, 당초 문화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선정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16. 하리동 일성당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주변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하리동 일성당」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 2구역 : 평지붕 최고높이 5m(1층),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1층) 이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하리동 일성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중마길 11 (하리1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327번지 (이격거리 : 약 450m)
-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2동 신축
 - 대지면적 : 2,945 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364.52m²(182.26m²×2동) / 729.04m²(364.52m²×2동)
 - ㅇ 건폐율 / 연면적 : 47.63% / 93.94%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평지붕), 9.5m(옥탑포함)
 - ㅇ 구조 및 마감 : 철근콘크리트, 스톤코트 및 아스팔트 슁글마감

라. 검토의견

(1) 근대문화재과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와 450m 이격되어 있으며 문화재와 사업예정지 사이에 능선이 있어 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유형문화재과

본 건은 예안이씨 충효당 보호구역에서 약 450m 이격된 부지에 2층의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거리가 멀고 잘 보이지 않으며 충효당의 측면에 해당하는 위치이므로 충효당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 2012. 9.28.)
 - 신청예정지는 동쪽 산 너머 조망되지 않는 먼 곳이고(400m 정도) 기존의 유사건물 옆에 건립하므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000 의견

- 상기 신청건의 대상부지는 당해 문화재 및 주변 문화재와 상당히 이격되어있어 시각상 저해되지 않음
- 또 당해부지는 민가마을 내에 위치하며 도로 바로 맞은편에 2층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어 있음
- ㅇ 이에 당해 신청 건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17.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정비 및 전시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주변 전시관 신축 및 주변정비에 대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경산 상영집 옆 전시관 신축 및 주변정비가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 2012년 문화재 국고보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건(원 위치에서 약 15m 이동) 정비 중에 있으며, 동 사업 완료 후 지정구역 변경 예정임
 - ※ 사업예정지는 현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를 포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 35, 36, 42번지
- (4) 신청내용 : 경산 상례문화공원 조성공사(주변정비 및 전시관 신축)
 - ㅇ 전시관
 - 건축면적 : 203.14m²
 - 높이 : 5.2m(최고6.4m+최저4.0m/2)
 - 층수 : 지상 1층
 - 외벽마감 : 미송널 노출콘크리트
 - 주변정비 : 상엿집을 중심으로 주위에 미송널 노출콘크리트벽(H=2.4m,
 - 가로 30m×세로 16.5m) 설치 등
- (5) 소요예산 : 300백만원

라.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영집 이외에 사당과 비각 등 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 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상례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전시관 신축 등은 지역 관광자원 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건립위치가 지근거리 이고 사면을 에워싸는 이질적인 벽체가 당해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정·보완 후 재심의 추진함이 타당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000, 000 / 2012.9.6.)]

○ 본 건은 1구역(보존지역) 내에 건립하고자는 전시관으로 위치가 역사문화 환경을 현상대로 보존해야 할 지근거리이고 건물의 형태가 이질성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사면을 에워싸고 있어 경관 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합당한 보존 방안을 강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ㅇ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18.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막거리 조성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문화 체험 시설(주막거리)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의 주막거리 조성이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며, 오거리당산, 고창읍성 등의 문화재와 인접한 지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000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오거리당산』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3) 신청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72(보호구역 경계선 인접)

(4) 신청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

o 연면적 : 269.01 m²

○ 규 모:지상 1층, 5개동

ㅇ 구 조 : 목구조 (초가집)

동	층	면적(m²)	구조	용도
A-1동	1	25.92	목조 전면3칸, 측면2칸	일반음식점
A-2동	1	66.42	목조 전면5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3동	1	49.5	목조 전면3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4동	1	68.85	목조 전면5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A-5동	1	58.32	목조 전면4칸, 측면3칸	일반음식점
계		269.01		

라. 검토의견

오거리당산 주변 주막거리 조성 사업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가능한 규모를 축소하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도록 시행되어야 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전문위원 000 / 2012.9.11.)]

- 당산이 갖는 공간상의 성격을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한옥의 규모와 간살을 축소하여 간결하고 소박한 초가 건물을 되도록 하며, 건물간에 이격거리를 두어 화재에도 안전하게 함
- 한옥과 당산공간은 전통 건축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설계하도록 권장하며, 동선의 자연적 기능성, 배수관에도 가장 이상적으로 배려하며 향후 당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함
- ㅇ 가능한 규모를 축소하여 당산과 읍성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함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 가결
 - 설계와 시공은 전문업체에 의하고 관계전문가 자문받아 시공, 주민 의견 반영 필요

19. 장흥 신와고택 및 오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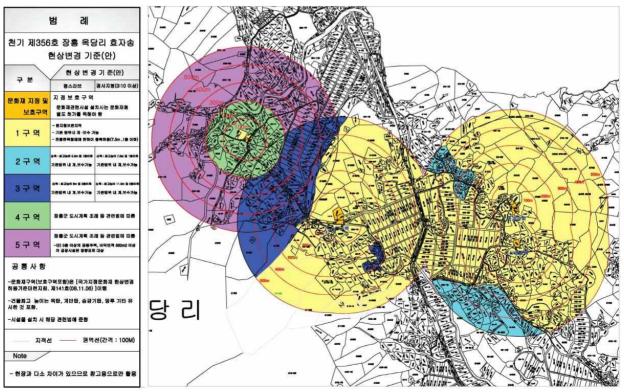
전남 장흥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장흥 신와고택」및 제270호 「장흥 오헌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장흥 신와고택」 및 「장흥 오헌고택」주변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 7.31.) 후 보완하여 이를 부의하는 것임
- 동 지역에 중민 제161호 「존재고택」 및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옥당리 효자송」이 있어 통합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000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9호「장흥 신와고택」및 제270호「장흥 오헌고택」
 - ㅇ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679번지 외
- (3) 제출내용 : 장흥 신와고택·장흥 오헌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十正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증축 허용(7.5m, 1층	이하)						
2구역	• 신축 : 최고높이 5m 및 1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신축 : 최고높이 7.5m 및 1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3구역	• 신축 : 최고높이 8m 및 2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 신축 : 최고높이 11m 및 2층 이하 •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공 통 사 항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은 [국가지정문회 (08.11.06)]이행 건축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正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175	•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증축 허용(7.5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4 + = 1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5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에서는 개수·보수 가능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통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사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및 확장								
항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등	권장(예: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는 않는	재료 권장								
	•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마. 참고사항[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000, 전문위원 000/2012. 7.31.)]

- ㅇ 오헌고택 좌측 4구역은 길을 따라 구분하고 길 우측편은 1구역으로 한다.
- ㅇ 1구역 내용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범위 내 개·보수 가능, 전통건축형태는 최고 7.5m, 증축은 1층 이하의 경우 허용하되, 한옥의 형태로 한다.
- ㅇ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바. 의결사항

- ㅇ 조건부 가결
 - 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하되, 1구역은 원지형보존지역으로만 함

검 토 사 항

20. 이응태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용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 소재한 고성이씨 귀래정종중의 선산에서 확인된 이응태묘에서 출토되어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이응태묘 출토유 물(복식 및 문서)」을 경상북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 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000
- (2) 대상문화재 :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46종 65점
 - ㅇ 소재지 :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박물관
 - ㅇ 소유자 : 안동대학교
 - 수량: 46종 65점(복식 47점, 문서 18점)
 - 복식: 단령 1점, 직령 5점, 철릭 7점, 장옷 2점, 액주름 2점, 남자 저고리 1점, 한삼 및 적삼 6점, 여자 저고리 3점, 동자 상의 1점, 개당고형 바지 4점, 합당고형 바지 6점, 短합당고 2점, 소형치마 1점, 버선 4켤례, 행전 3쌍, 모자 1점, 대 3점, 염낭 1점, 멱목 1점, 오낭, 금, 종교, 횡교, 부채, 마포 조각, 석 등
 - 문서 : 초서 편지 14편(3편 한글 병기), 한글 편지 4편
 - * 상세내용 별첨1 출토유물 사진 참조

라. 현지조사의견('12, 06, 08): 상세내용 별첨2 참조

〈000 문화재위원〉

○ 간찰류는 16세기 말·글·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특별한 것은 없음.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이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으며,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재정리 후 재심의가 요망됨

〈000 무형분과 문화재전문위원, 000 서울여대 교수>

○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과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 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 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복식자료는 조선중기 복식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편지글들은 당시의 양반들의 관심사 및 풍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특히 원이엄마의 편지글 및 미투리는 조선중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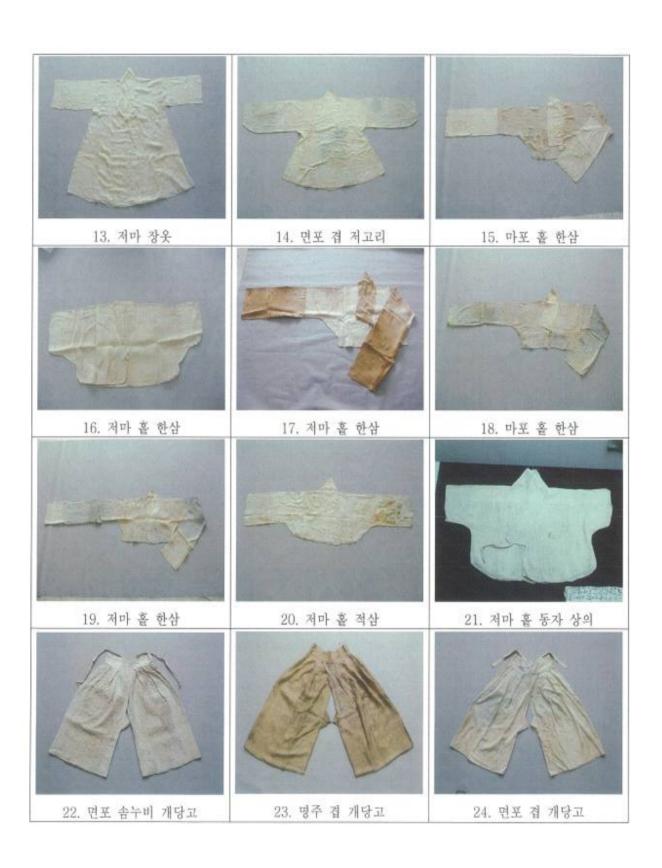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ㅇ 보류
 - 재정리 후 재심의

〈별첨 1〉 출토유물 사진

이응태(李應台, 1556~1586) 묘 출토유물 사진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문화재위원 000

안동대학교박물관 출토유물자료 2건 조사결과 및 소견

1. 조사일자 : 2012년 6월 8일

2. 현장 : 안동대학교박물관

- 3. 조사대상 자료(出土遺物) 현황파악
- 1) 유물자료 : 총괄 2건
 - (1)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 (2) 이응태(남. 固城李氏 應台. 1556~1586년)
 - * 유물 중 일부는 박물관에서 전시중
- 2) 인쇄물 :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4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제4회 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회 "450년만의 외출"도록. 2000.2 안동대학교박물관
- 3) 자료(출토유물) 수집 및 처리(정리) 일지
 - (1) 유물수습

1차 :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1998년 4월5일

2차 : 20여일 뒤 4월24일 이응태(남. 固城李氏 應台. 1556~1586년) 발굴

- (2) 보존 처리(형태복원, 자료정리)
- (3) 자료 공개 전시 : "450년만의 외출 특별 전시". 1998년 9월~1999년 6월
- 4. 조선시대 무덤[墓]에서 나오는 복식(服飾)참조 유물류 자료 현황 크게 피륙[纖維]과 기타 2부류 나뉨
- 1) 피륙자료 : 주로 옷[服飾]류인데 이중에는 시신이 입고 있는 壽衣와, 葬儀用의 <u>險</u>襲과 補空用
- 2) 기타 : 드물게 중이[韓紙類], 輓詞, 명기류, 책, 편지류, 장식거리, 생활용구류(호로,염주,囊)
 - * 무덤에서 나오는 출토유물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전시 및 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임
- 5. 본 유물의 정리현황 및 특징
- 1) 피륙류
 - (1) 보수 : 7~80%

상태가 불량한 것(특히 솜이나 겹)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음. 그중에는 특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예: 일선문씨 "소색 저마 홑 장삼". "상태 반파"라 하였다. 이 옷은 수의로 입었던 겉옷[袍]으로 중요한 매우 자료이다. 복원품으로 247쪽에 제시됨)

(2) 미완성

어떤 유물에는 한 점에서도 일부는 보수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음.

(3) 유물의 번호 및 분류에 혼선과 미정리 된 것들이 보임.

2) 특징

(1) 피륙자료들

의류,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2) 기타 : 묘주별로 본 자료분류
 - ① 이응태(남) ,
 - 가. 간찰류 18점 : 편지[輓詞], 만시(輓詩), 기타류---글은 부채, 염낭에도 씀.
 - 나. 염낭 : 간찰과 빗도 나옴.
 - 다. 편지글 : 한글 1통, 한글과 한문 병용 3통, 한문 9통.
 - 라. 신: 麻鞋(麻+毛)
 - ② 일선문씨(여)
 - 가. 일반 피륙으로 만든 일부 수의와 염습용.
 - 나. 생활용구(실꾸리, 호로, 염주, 囊類).
- 3) 간찰[書・紙]자료

이응태묘의 간찰류에는 한글편지(언간:諺簡)가, 염낭 안의 글(한문)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쓴 가사(家事)에 대한 것으로 매사냥 처갓집거주 전염병 노예 농사일이 적혀있음

6. 소견

- 1) 본 유물들이 가지는 가치 및 의의
 - (1) 간찰류는 16세기 말・글・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 (2) 피륙[織物]자료(服飾 및 기타 殮襲具類)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본 자료에서 여성의 '저고리깃처리기법'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재정리 후 재심의 요망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다.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놓치지 말고 재분석 재정리하여 더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재전문위원 000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 .0	06. 08	대상문화재	화재 이용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 하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				
	조 사 자	성명		000	전공 분야	직물사			
	<u> </u>	소 속		000	직위(직책)	교수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	L화재(중요)	민속자료)			
	② 문화재 명칭	이응태되	교 출토	.유물, 이정명	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			
	③ 입지 현황 및 역 사문화환경	정파 문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지구 택지개발공사 시 고성이씨 귀래 정파 문중 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안동 대학교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이 유물은 이명정(李命貞, 1504~1565)의 처인 일선문씨의 묘와 손자 이응태(李應台, 1556~1586)의 묘에서 수습되었다. 이명정은 고성 이씨 15세로 연산군 17년(1504)에 출생하여 명종 20년 (1565)에 졸한 인물로 생전에 종 8품의 奉仕을 지냈다. 일선문씨 는 군수를 지낸 文繼昌의 딸로 생몰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일은 2월 27일로 기록되어 있다. 발굴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550년대에서 60년 대 초로 추정된다. 안동시 정상동에 세거하는 고성 이씨는 13세 인 이굉(李宏, 1441~1516)의 후손들이라 한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 유물은 피장자의 연대가 확실하며 개관 후 염습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전기의지 않은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수습된자료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구비되어있어 실제적인 상장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지역구, 한국복식사, 국문학 연구에 귀한자료이며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유일한 유물로 다른식 자료들과 차별된다. 근거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중요민재로 가치가 있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는 전형적인 유물이다.							

(6) 지정 대상이용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일괄 46종 65점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일괄 41종 47점 및 범위 (7) 문화재 보존 보호 영향 행위기준(안) 과리 사항 유물은 발굴 후 안동대학교에서 세척과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⑧ 보존정비 일부 유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유물의 안정적 괜 검토 활용 착안사항 리를 위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응태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모두 45종 47점이며, 직물은 견 직물, 면직물, 마직물 등을 소재로 한 포류, 바지류, 저고리류 소품류이다. 또한 편지류 18점이 출토되었으며, 초서 편지 14편 (3편 한글병기). 한글편지 4편이다. 이명정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41종 47점으로 마직물, 면직물, 견직 물을 소재로 한 포류, 저고리류, 치마류가 수습되었다. 유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본 유물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개관 후 수습 단계에서 염습의 상태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던 흔하지 않은 자료로 16세기 상장례 연구 및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종합의견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 적 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 된 장삼으로 추정되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체 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자복식연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 과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 내에서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재 료이다. 따라서 이응태묘 출토유물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은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 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9월 26일

제출자: 000 (서명 또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06.08		대상문화재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성 명	명 000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조 사 자	소속		000	직위(직책)	조교수		
	① 문화재 종류		국:	가 중요민속된	<u>-</u> 화재로 지정	하는 것이 합당함.		
	② 문화재 명칭			- '		문서) 46종 65점 물(복식) 41종 47점		
주요	③ 입지 현황 및 역 사문화환경	고성이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고성 이씨 문중묘 이장과정에서 수습. 고성이씨 입향조 낙포 이굉(李浤, 1441-1516)은 1513년부터 안동에 거주하여 그 후손들이 정상동에 세거함.					
지정 사항	(4) 연역·유래[p, a,					편지와 복식 수습. 신분과		
검토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이용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일괄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호물>						
		<보호-	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영향 행위기준(안)8보존정비 및활용 착안사항							
검토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8월 29일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 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서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의복에 해당한다. 특히 이응태의 무덤에서 나온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조선중기의 한글의 사용과 가족관계 호칭 등 생활사 전반에 걸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을 섞어 만든 미투리 등도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종합 의견>

-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 유물(복식)"은 조선중기 16세기 인물인 이응태(1556~1586)와 그의 할머니 일선문씨의 것으로, 상장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은 일선문씨 무덤에서 41종 47점, 이응태무덤에서 46종 65점이 수습되었다.
- 특히 이용태무덤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용태에게 쓴 한글편지와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서 만든 미투리,형(이몽태)이 죽은 동생 이용태에게 보낸 한시,형이 동생을 애도하여부채에 쓴 만시 등이 수습되었다.한글편지와 미투리는 우리나라 방송 뿐만 아니라 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2007년 11월호), Archaeology(2010년 3/4월호), Antiquity(2009년 3월호)에도 소개되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 이 응태 무덤에서는 단령, 직령, 철릭, 바지, 저고리 등과 함께 적삼, 여자 치마 저고리 등이 수습되어 16세기 중후반의 남자 복식과 수례지의 풍습을 알 수 있다.
 - * 일선문씨의 복식은 현재까지 1점 밖에 보고되지 않은 장삼(長衫)으로 추측되는 복식을 비롯하여 16세기 초 조선시대 여자복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편지와 미투리 복식 등 일괄 지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 * 현재 상태는 일부 유물의 경우는 보존처리(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존처리를 완료 한 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별첨 3〉 안동시 검토의견

意見書

□ 문화재명 : 이용태 묘 출토유물

□ 지정종별 : 중요민속자료

□ 소 유 자 : 안동대학교

□ 수 량: 46종 65점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 안동시 의견

。 이 유물들은 대부분이 복식자료 및 편지글이다. 복식자료는 조선 중기 복식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편지글들은 당시의 양반들의 관심사 및 풍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원이엄마의 편지글 및 미투리는 조선중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 8. 11.

안 동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귀하

21.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 소재한 고성이씨 귀래정종중의 선산에서 확인된 이명정과 그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토되어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인「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을 경상북도에서 국가지 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000

(2) 대상문화재 :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41종 47점

ㅇ 소재지 :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박물관

ㅇ 소유자 : 안동대학교

ㅇ 수량: 41종 47점

- 복식: 장삼 1점, 대대 1점, 장옷 4점, 장 저고리 12점, 단 저고리 1점, 적삼 2점, 한삼 3점, 치마 5점, 개당고형 바지 2점, 합당고형 바 지 3점, 행전 1점, 버선 4점, 신발 1점, 소모자 1점, 멱목, 대렴용 금, 종교, 횡교, 석 지요 등

* 상세내용 별첨1 출토유물 사진 참조

라. 현지조사의견('12.06.08): 상세내용 별첨2 참조

〈000 문화재위원〉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으나,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임.
 다만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으며,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재정리 후 재심의가 요망됨

〈000 무형분과 문화재전문위원, 000 서울여대 교수>

○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적 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음.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된 장삼으로 추정되 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가지정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000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이 유물들은 조선 중기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대부분이 복식자료로, 복식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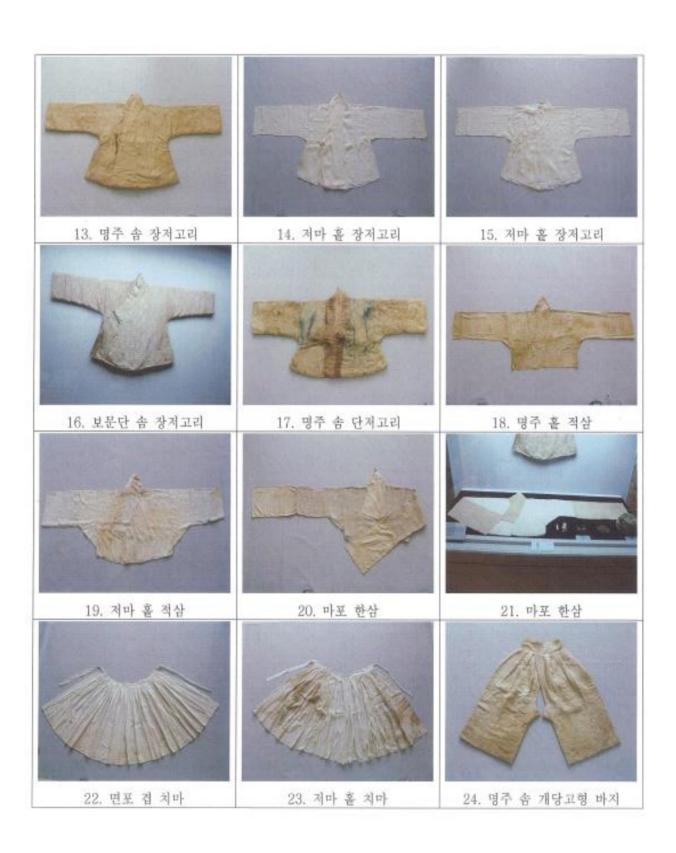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ㅇ 보류
 - 재정리 후 재심의

〈별첨 1〉 출토유물 사진

이명정(李命貞, 1504~1565) 부인 일선 문씨(一善 文氏) 묘 출토유물 사진









〈별첨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문화재위원 000

안동대학교박물관 출토유물자료 2건 조사결과 및 소견

1. 조사일자 : 2012년 6월 8일

2. 현장 : 안동대학교박물관

3. 조사대상 자료(出土遺物) 현황파악

1) 유물자료 : 총괄 2건

(1)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2) 이응태(남. 固城李氏 應台. 1556~1586년)

* 유물 중 일부는 박물관에서 전시중

2) 인쇄물 : .안동대학교박물관 총서 14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제4회 안동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회 "450년만의 외출"도록. 2000.2 안동대학교박물관 3) 자료(출토유물) 수집 및 처리(정리) 일지

(1) 유물수습

1차 : 일선문씨(여. 一善文氏. 생몰미상) 1998년 4월5일

2차 : 20여일 뒤 4월24일 이응태(남. 固城李氏 應台. 1556~1586년) 발굴

- (2) 보존 처리(형태복원, 자료정리)
- (3) 자료 공개 전시 : "450년만의 외출 특별 전시". 1998년 9월~1999년 6월
- 4. 조선시대 무덤[墓]에서 나오는 복식(服飾)참조 유물류 자료 현황 크게 피륙[纖維]과 기타 2부류 나뉨.
- 1) 피륙자료 : 주로 옷[服飾]류인데 이중에는 시신이 입고 있는 壽衣와, 葬儀用의 <u>險襲과 補空用</u>.
- 2) 기타 : 드물게 종이[韓紙類], 輓詞, 명기류, 책, 편지류, 장식거리, 생활용구류(호로,염주,囊).
 - * 무덤에서 나오는 출토유물을 수습하고 정리하여 전시 및 자료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임
- 5. 본 유물의 정리현황 및 특징
- 1) 피륙류
 - (1)보수 : 7~80%

상태가 불량한 것(특히 솜이나 겹)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 많음 그중에는 특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예:일선문씨 "소색 저마 홑 장삼". "상태 반파"라 하였다. 이 옷은 수의로 입었던 겉옷[袍]으로 중요한 매우 자료이다. 복원품으로 247쪽에 제시됨)

(2) 미완성

어떤 유물에는 한 점에서도 일부는 보수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음.

- (3) 유물의 번호 및 분류에 혼선과 미정리 된 것들이 보임.
- 2) 특징 .
 - (1) 피륙자료들

의류,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2) 기타 : 묘주별로 본 자료분류
 - ① 이응태(남),
 - 가. 간찰류 18점 : 편지[輓詞], 만시(輓詩), 기타류---글은 부채, 염낭에도 씀.
 - 나. 염낭 : 간찰과 빗도 나옴.
 - 다. 편지글 : 한글 1통, 한글과 한문 병용 3통, 한문 9통.
 - 라. 신: 麻鞋(麻+毛)
 - ② 일선문씨(여)
 - 가. 일반 피륙으로 만든 일부 수의와 염습용.
 - 나. 생활용구(실꾸리, 호로, 염주, 囊類).
- 3) 간찰[書·紙]자료

이응태묘의 간찰류에는 한글편지(언간:諺簡)가, 염낭 안의 글(한문)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쓴 가사(家事)에 대한 것으로 매사냥 처갓집거주 전염병 노예 농사일이 적혀있음.

6. 소견

- 1) 본 유물들이 가지는 가치 및 의의
 - (1) 간찰류는 16세기 말·글·紙류 및 생활사(민속)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 (2) 피륙[織物]자료(服飾 및 기타 殮襲具類)

衣類, 염습구류는 2012년 9월 현재 보고된 다른 지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지역과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본 자료에서 여성의 '저고리깃처리기법'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2) 재정리 후 재심의 요망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명칭, 보수가 잘못 된 것, 미정리 된 것들이 더러 있다. 특히 피륙정리에서 한 치의 조각이나 시접 및 바느질부분은 시대와 유물의 특성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놓치지 말고 재분석 재정리하여 더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재전문위원 000

[별지	제4호서식]					(호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 .06. 08		대상문화재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직물사		
		소 속		000	직위(직책)	교수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된	문화재(중요)	민속자료)		
	② 문화재 명칭	이용태	묘 출토	유물, 이정명처	일선문씨도	· 출토유물		
	③ 입지 현황 및 역 사문화환경	문중 신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상지구 택지개발공사 시 고성이씨 귀래정파 문중 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안동대학교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주요 지정 사항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이 유물은 이명정(李命貞, 1504~1565)의 처인 일선문씨의 묘와 손자 이응태(李應台, 1556~1586)의 묘에서 수습되었다. 이명정은 고성이씨 15세로 연산군 17년(1504)에 출생하여 명종 20년(1565)에 졸한인물로 생전에 종 8품의 奉仕을 지냈다. 일선문씨는 군수를 지낸文繼昌의 딸로 생몰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기일은 2월 27일로기록되어 있다. 발굴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것으로 보이므로 대략 1550년대에서 60년대 초로 추정된다. 안동시정상동에 세거하는 고성 이씨는 13세인 이굉(李宏, 1441~1516)의 후손들이라 한다.						
검토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 유물은 피장자의 연대가 확실하며 개관 후 염습의 하나 하나구체적인 모습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선전기의 흔하지 않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수습된 염습구 자료들은 교적 완전하게 구비되어있어 실제적인 상장례의 일례를 확인할 있다. 특히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지역문화연구, 한국복식사, 국학 연구에 귀한자료이며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는 현재까지 견된 바 없는 유일한 유물로 다른 출토복식 자료들과 차별된다. 근거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중요민속문화재가치가 있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적인 유물이다.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일괄 46종 65점 이명정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복식)일괄 41종 47점
보호 관리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사항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유물은 발굴 후 안동대학교에서 세척과 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유물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유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의견	이응태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모두 45종 47점이며, 직물은 견직물, 면직물, 마직물 등을 소재로 한 포류, 바지류, 저고리류, 소품류이다. 또한 편지류 18점이 출토되었으며, 초서 편지 14편(3편 한글병기), 한글편지 4편이다. 이명정의 처인 일선문씨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41종 47점으로 마직물, 면직물, 견직물을 소재로 한 포류, 저고리류, 치마류가 수습되었다. 유물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본 유물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으며, 개관 후 수습단계에서 염습의 상태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흔하지 않은 자료로 16세기 상장례 연구 및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유물은 조형적 고찰을 통해 16세기 중·후기의 형태나 구성적특징, 바느질방법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선 문씨묘에서 출토된 장삼으로 추정되는 복식은 조선 전기 여성용 예복으로는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여자복식연구에 가치가 있다. 특히 이응태묘에서는 부인이 남편인 이응태에게 쓴 한글편지글과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삼은 미투리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당시의 풍속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응태묘 출토유물과 이정명처 일선문씨묘 출토유물은 조선중기 복식사, 풍속사, 상장례 연구에 큰 가치가 있으므로 일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	l와 같이 「문화	· 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9 월 26 일

제출자: 000 (서명 또

문화재청장 귀하

□ 교수 00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4오기ㅋ]					(立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2.06.08		대상문화재	, - ,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1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조 사 자	성 명		000	전공 분야	한국복식사		
	1 / /	소 속		000	직위(직책) 조교수			
	① 문화재 종류		국:	가 중요민속된	<u>'</u> 화재로 지정	하는 것이 합당함.		
	② 문화재 명칭					문서) 46종 65점 물(복식) 41종 47점		
주요	③ 입지 현황 및 역 사문화환경	고성이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고성 이씨 문중묘 이장과정에서 수습. 고성이씨 입향조 낙포 이굉(李浤, 1441-1516)은 1513년부터 안동에 거주하여 그 후손들이 정상동에 세거함.					
지정 사항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이광의 손자 이정명 합장묘에서 일선문씨 미라 및 복식 수습. 무연고로 알려진 이응태묘에서 미라 및 편지와 복식 수습. 신 생몰년이 뚜렷한 조선시대 중기의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						
 검토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점 최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명처 일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이용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복식) 일괄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보존영향 행위기준(안)8보존정비및활용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년 8월 29 일						합니다.		
 	근화재청장 귀하			제출자:	000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 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서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의복에 해당한다. 특히 이응태의 무덤에서 나온 한글 편지와 만사 등은 조선중기의 한글의 사용과 가족관계 호칭 등 생활사 전반에 걸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을 섞어 만든 미투리 등도 현재까지 유일한 것이다.

<종합 의견>

-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응태묘 출토유물(복식 및 문서) 이정명처 일선문씨 묘 출토 유물(복식)"은 조선중기 16세기 인물인 이응태(1556~1586)와 그의 할머니 일선문씨의 것으로, 상장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복식은 일선문씨 무덤에서 41종 47점, 이응대 무덤에서 46종 65점이 수습되었다.
 - * 이 응태 무덤에서는 단령, 직령, 철릭, 바지, 저고리 등과 함께 적삼, 여자 치마 저고리 등이 수습되어 16세기 중후반의 남자 복식과 수례지의 풍습을 알 수 있다.
 - * 일선문씨의 복식은 현재까지 1점 밖에 보고되지 않은 장삼(長衫)으로 추측되는 복식을 비롯하여 16세기 초 조선시대 여자복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편지와 미투리 복식 등 일괄 지정하는 것을 건의한다.
 - * 현재 상태는 일부 유물의 경우는 보존처리(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존처리를 완료 한 후 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별첨 3 안동시 검토의견서

意見書

□ 문화재명 : 이명정 처 일선문씨 묘 출토유물

□ 지정종별 : 중요민속자료

□ 소 유 자 : 안동대학교

□ 수 량: 41종 47점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 안동시 의견

이 유물들은 조선 증기 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대부분이 복식자료
 로, 복식사 및 생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9. 8. 11.

안 동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 귀하

보고사항

22.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성읍 민속마을 (중민188)	제주 서귀포시	œ	[성읍마을 주변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 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92번지 1호(지정구역) ○ 신청내용 -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2대) · 지주 및 부착대 등	허가	'12.10. 8.
경주 양동마을 (중민189)	경북 경주시	000	[경주 양동마을 내 TV중계기 설치] ○신청인: (주)포항문화방송 ○위 치: 경주 강동면 양동리 산 30번지 (지정구역) ○신청내용 - 당 초 ・면적(9.0㎡), 높이(15m, 피뢰침 3.0m 포함) ・조건: 계획안대로 시행하되, 중계기의 나무장식은 제거하고 중계기의 높이는 기존 나무보다 낮추도록 함 - 변 경 ・면적(9.0㎡), 높이(15m, 피뢰침 3.0m 포함/수목위로 일부 노출 허용), 수신 안테나추가 설치(3m), 수신케이블 포설 - 사 유: TV송신안테나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파의 방사에 방해가되어 원활한 TV수신이 불가함	변경 허가	'12.10. 4.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23. 경주 양동마을 문화유산지식콘서트 개최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에서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를 위한 인문학 강좌 "문화유산지식콘서트"를 개최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전문가 공개강의와 전통 공연을 통해 세계유산 등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돕고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청소년 대상 인문학 강좌인 "문화 유산지식콘서트"를 경주 양동마을에서 개최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보고 인: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 ㅇ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주요내용: 문화유산지식콘서트 개최
 - 기획·제작 : 문화재청, 한국교육방송(EBS),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공동기획·제작)
 - ㅇ 프로그램명 : 문화유산 지식콘서트
 - 녹화일시 : 2012. 10. 27.(토) 15:00~17:30
 - * 무대는 10. 26.(금)부터 설치하고 녹화 종료 후 바로 철거 예정
 - 방송일시 : 2012. 11. 18.(일) 21:20~22:50 / EBS(지상파)
 - ㅇ 녹화장소 : 양동마을 관가정 주차장
 - 무대규모 : 무대 129.6 m²(14.4×9.0 m), 객석 400 석
 - ㅇ 출연진
 - MC : 국악인 000
 - 강사 : 미술평론가 000. 칼럼니스트 000. 건축학 교수 000
 - 공연 : 여성국악실태악단 000. 소리꾼 000. 퓨전국악단 000

라. 의결사항

0 원안접수